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운영규칙

문서번호	5-0-8
제정일자	2006.08.01
개정일자	2014.03.01
개정번호	Ver. 10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학칙 59조에 의거 동양미래대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

제2조(구성) ①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산학협력부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부처장, 종합정보지원실장, 각 학부장과 건축과장, 생명화공과장, 산학협력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1> <개정 2009.3.1.> <개정 2013.4.1.> <개정 2014.3.1>
 ②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7.1>

1. 실험실습기자재의 확보 예산의 부서별 조정
2. 실험실습기자재의 품목별 확보 계획의 적정성 심사
3. 주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의 우선순위 심사
4. 실험실습기자재 중·장기 확보계획 심의
5. 학부(과) 공동 활용 실험실습기자재 선정 심의
6. 실험실습기자재의 효율적 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의 심의·평가
7.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의 요구
8. 실험실습기자재의 불용처분에 관한 심의
9. 실험실습비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10. 전공동아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11. 실험실습기자재 도입 및 실험실습비 관리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12. 기타 실험실습기자재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제4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3.1>

제6조(의결) 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2.1>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요청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5.1>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모든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개정) 개정안은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5.1>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